

파생상품위험평가액 & VaR 공시

【2025. 10. 01. 기준】

『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』 별지 제67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- 다 음 -

1.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및 최대손실예상액(VaR)

(단위 : 백만원, %)

펀드명	파생상품 위험평가액	NAV대비 비율 (위험평가액 /NAV)	파생상품 최대손실 예상금액 (VaR)	NAV대비 비율 (VaR/NAV)
밸류시스템 비바체 롱숏 일반 사모투자신탁	0	0	0	0
밸류시스템 알레그로 롱숏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[주식형]	0	0	0	0
밸류시스템 프레스토 롱숏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[주식형]	721	2.62	62	0.23
밸류시스템 매크로롱숏 손익차등 일반 사모투자신탁	0	0	0	0
밸류시스템 액티브롱숏 손익차등 일반 사모투자신탁	0	0	0	0

*VaR : 99%신뢰수준, 10일 기준

2.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계산방법

당사는 '금융투자업규정 제4-54조(위험평가액 산정방법)'에 의거하여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을 계산합니다.

단, 공시되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은 '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' 별지 제67호 제4-1조(특정 요건을 준수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위험평가액 제외)에 따라, **국내외 장 내파생상품(장내 주가지수선물 및 개별주식선물에 한함) 거래로 인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은 제외**한 수치입니다.

< 금융투자업규정 제 4-54조 (위험평가액 산정방법) >

① 법 제81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명목계약금액으로 하며, 그 명목계약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승수효과(레버리지)가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.

1.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파생상품: 기초자산(자산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가격에 거래량(계약수)과 승수를 곱하여 산정한다.

2.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파생상품(이하 "옵션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목을 명목계약금액으로 한다.

가. 옵션매수: 기초자산 가격에 계약수와 승수 및 델타(기초자산 가격이 1단위 변화하는 경우 옵션가격 변화)를 각각 곱한 금액(이하 "델타위험액")

나. 옵션매도: 델타위험액에 추가로 델타 변화에 따른 위험액(이하 "감마위험액")과 기초자산 변 동성 변화에 따른 위험액(이하 "베가위험액")을 모두 합산한 금액. 이 경우, "감마위험액" 및 "베가위험액"은 제3-2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.

3.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파생상품(이하 "스왑"이라 한다)은 다음 각목을 명목계약금액으로 한다.

가.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는 거래(통화스왑) : 지급하기로 한 통화의 명목원금

나.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거래(금리스왑):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경우 만기까지 지급 하기로 한 금전총액,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경우 만기까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전총액의 시가평가금액

다. 준거자산의 신용사건 발생 여부에 따라 금전 등을 교환하는 거래(신용부도스왑): 보장매수자의 경우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, 보장매도자의 경우 신용사건 발생시 지급하기로 한 명목금액

라. 준거자산의 수익을 교환하는 거래(총수익스왑): 수취하기로 한 금전총액이 부(-)의 값을 가지는 경우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과 수취하기로 한 금전총액의 절대값을 더한 금액, 수취하기로한 금전총액이 양(+)의 값을 가지는 경우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

마. 가목~라목 외 기초자산의 교환을 포함하는 거래: 기초자산가격에 거래상대방에게 만기까지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을 더한 금액

바. 가목~라목 외 기초자산을 제외한 금전만 교환하기로 한 거래: 거래상대방에게 만기까지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

4. 그 밖의 거래: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파생상품거래가 혼합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. 다만, 만기손익구조의 최대손실금액이 제한되어 있는 합성거래의 경우에는 그 최대손실금액을 명목계약금액으로 할 수 있다.
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불구하고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간에 거래체결시 합의하는 명목원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변화를 감안하여야 한다.

6.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라목의 총수익스왑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해 사실상의 차입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24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준거자산의 취득가액을 위험평가액에 포함한다.

7. 그 밖의 거래: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파생상품거래가 혼합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. 다만, 만기손익구조의 최대손실금액이 제한되어 있는 합성거래의 경우에는 그 최대손실금액을 명목계약금액으로 할 수 있다.

8. 제1호부터 제 4호까지에 불구하고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간에 거래체결시 합의하는 명목원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변화를 감안하여야 한다.

9.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라목의 총수익스왑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해 사실상의 차입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24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준거자산의 취득가액을 위험평가액에 포함한다.

② 제1항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명목계약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.

1.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기준상 위험회피회계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: 명목계약금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

2. 파생상품 거래가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거래: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조정값을 반영하여 위험평가액을 감액하는 방법

가. 입증가능한 위험 감소가 있을 것

나. 동일 기초자산군과 관련될 것

다. 정상적이지 않은 시장 상황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될 것

라. 수익창출 목적의 거래가 아닐 것

마. 파생상품과 관련된 위험이 상쇄될 것

3. 기초자산이 동일(발행인이 동일하고 잔존만기의 차이가 1년 이내인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기초자산으로 본다)하고 가격의 변화 방향이 반대인 파생상품 거래(거래상대방이 다른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제외한다): 각각의 위험평가액을 기준으로 상계한 후 잔여 명목계약금액을 위험평가액으로 산정하는 방법.

③ 제2항에 따라 명목계약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·유지 하여야 한다.

④ 법 제81조제1항제1호바목의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 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으로 한다.

⑤ 법 제81조제1항제1호사목의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은 동일 거래상대방 기준으로 장외파생상품 매매 거래의 만기까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에 대한 추정금액(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담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)을 말한다.이 경우 당해 거래로 인하여 지급받기로 한 금액과 지급하기로 한 금액 간에 상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한 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것으로 평가(법 제238조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)되는 총 금액으로 산정한다.

⑥ 제5항에 따라 담보가치를 차감하는 경우에는 가치산정이나 담보권 행사를 통한 채권회수가 곤란한 자산을 담보로 받아서는 아니 되며 공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담보사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.